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경제지원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경제지원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0.8.12.)시행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의 용역 점포 중 요건에 맞는
우리 구의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상점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상인회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 2020. 10. 12일부터 11.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0. 11.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820/11
----------	----------

제출년월일: 2020. 11. 20.

제출자: 달서구청장
(경제지원과장)

1. 개정이유

- 경기침체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0.8.12.) 시행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요건에 맞는 우리 구의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신설)
- 나.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0. 12. ~ 11. 2.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5.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제5조제4항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 영 및 규칙의 전통시장 인정·취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달리”를 “다르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허가”를 “인가·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생 략) <u><신 설></u>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대구광	6. ----- ----- ----- 구청장 -----

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 7. (생 략)

제5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생 략)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 6.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

7. ~ 10.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5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필요한 비용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지켜야
-----.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알려야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 영 및 규칙의 전통시장 인정·취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대구광역시 또는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

1. (현행과 같음)

2. _____
- 은-으- - -

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2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인 · 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등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 ·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7조(인가 · 허가 등의 일괄처리) -----

인
가 · 허가-----
-----.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0.8.12.)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
- 요건에 맞는 우리 구의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함

2. 비용발생 요인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 생략

3. 관련조문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4. 비용 추계결과 : 해당 없음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해당 없음

6. 작성자 :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 관 련 법 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11. >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 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